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 가입조건 변경 제도성 특별약관

제1조 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 [별첨]「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 가입조건 변경 대상 특별약관」에서 정한 특별약관(이하「대상 특별약관」이라 함) 중 한 가지 이상의 특별약관을 포함하고,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제2조 (특별약관의 적용)

①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, 해당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대상 특별약관의 기타사항 조건 중 아래에 기재된 기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(1)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선행가입 특별약관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, 동일한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가입해야 함
(2)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선행가입 특별약관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
(3)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해당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
(4)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(A)과 특별약관(B)는 동시에 가입해야 함

주) 상기 기재된 기타사항과 동일한 의미로, 대상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선행가입 조건을 부가하는 기타사항을 모두 포함함

② 제1항에 따른 가입조건 변경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 [별첨]에 기재된 대상 특별약관에 한하며, 이를 세부보장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가입조건이 변경된 계약 중 대상 특별약관이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경우, 각 세부보장별로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된 세부보장은 해당 계약의 대상 특별약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 잔여 세부보장의 경우 해당 계약의 대상 특별약관을 각 세부보장별로 적용합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세부보장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대상 특별약관의 해지된 세부보장에 대한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지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. 단, 해지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제3조 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